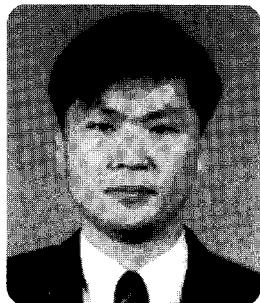


# 유럽의 특허침해 소송제도와 케이스(1)



정연용  
<특허청 전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 I. 소 개

여기서는 침해소송제도면에서 유럽의 특허침해 소송제도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지역이외(월간 발명특허 과월호 및 特許新書 참조)의 이탈리아 침해소송제도를 논하며, 케이스로서는 독일의 침해소송을 하나의 예로서 들어 유럽의 특허침해소송 제도에 대한 단면을 살펴보는데 그 의의를 둔다.

## II. 이탈리아의 특허제도

이탈리아에서 특허는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에 걸쳐 당해 특허를 생산,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서 제3자가 생산, 이용, 판매, 수입하지 못하도록 독점배타권을 부여해 준다.

이와 같은 권리를 부여해 주는 특허의 대상으로서는 산업상 발명(industrial inventions), 실용신안(utility models)-사용 또는 응용하기 용이하거나 통상 특별한 효과를 갖는 장치나 기계, 부품 등을 만든 소발명을 지칭<sup>1)</sup>, 의장(industrial designs), 신 식물변종<sup>2)</sup>(new plant varieties), 반도체 칩 보호(semiconductor products topographies; 단, 등록주의)

- 1) an invention which makes machines or parts of machines, instruments, tools or objects in general particularly efficient or easy to apply or use.
- 2) 미국특허법 제161조에서도 유사하게 “.....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d ..... new variety of plant, ....”라고 규정됨.

를 들 수 있다.

독점배타권은 출원일로부터 집적회로 발명의 경우 20년, 의장의 경우 15년, 실용신안의 경우 10년의 권리존속기간을 갖고, 신식물변종은 권리부여로부터 15년의 기간동안 보호를 받으나, 포도주와 주류(wines and species)는 30년간의 존속기간을 부여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해서 등록신청에 의해 등록을 받는데, 등록출원일로부터 또는 (자국 영역 밖에서) 최초 상업적 이용이 시작된 날(the first dates of the end of the calendar year)로부터 1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 1. 特許 要件

발명이나 의장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규성(novelty)<sup>3)</sup>, 진보성(inventive step)<sup>4)</sup>. 산업상 이용성(industrial application)<sup>5)</sup>. 그밖의 적법성(lawfulness)으로서 공중질서와 도덕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sup>6)</sup>. 이외에도 발명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발견, 과학적이론, 수학적 방법, 인간과 동물의 치료방법, 게임이나 비즈니스, 인간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규정·계획 등, 정보의 단순한 개시(presentation), 동물의 변종이나 이들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인 비미생물학적 방법 등으로서 유럽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다.

한편, 제3자는 심사기간동안에 선행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특히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없고, 거절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통지가 있는 후 30일 이내에 항고부에 항고할 수 있다<sup>7)</sup>.

다음의 특허는 무효가 된다.

- 상기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 표현적으로 판례 사건의 하나와 일치하여 특허성이 제외된 것
  - 명세서의 기재가 충분하게 명확하고 완전하게 (clear and complete) 공개가 안되었을 것
  - 발명의 대상이 특허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 때
  - 당해 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무권리자인 때(권리자의 적격여부)
- 다음 경우의 특허는 권리가 소멸된다.
- 수수료나 등록유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발명이 (시장 등에서) 현시화되지 않거나 강제 실시권을 부여한 경우 2년이내에 현시화되지 않은 경우.

3) 이탈리아 특허법 제14조1항.

4) 이탈리아 특허법 제16조

5) 이탈리아 특허법 제17조

6) 이탈리아 특허법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산업상 발명에 관한 특허령(제1127호)으로 시작하여 6회에 걸친 법개정이 있었으며, 1994년에 새로운 식물변종특허의 허여에 관한 특허령(391호)을 공포하여 199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7) 이탈리아 특허법 제55조

8) 1994년의 한국과 이탈리아간 상호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262건을 출원하였으며, 83건을 등록받았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467건을 출원하였으며, 45건을 등록받았다.

◆ 특허 및 신규 식물변종특허<sup>⑧</sup>에 대한 수수료(단위: lire)

출원 및 위임장에 대한 수수료		80
명세서, 초록, 도면에 대한 인쇄/ 공보발행비	10페이지 미만	100
	10페이지이상~20페이지미만	150
	20페이지이상~50페이지미만	350
	50페이지이상~100페이지미만	700
	100페이지이상	1200
등록유지료	1년/2년/3년	25/50/60
	4년/5년/6년	70/90/130
	7년/8년/9년	180/250/300
	10년/11년/12년	350/500/700
	13년/14년/15년	800/900/1100
등록일이후 6개월이내 추가등록유지료		100
라이센스 부여료		2700

## ◆ 실용신안에 대한 수수료(단위: lire)

출원료		50
등록료	한번에 10년치를 낼 경우	1000
	5년씩 나누어 첫번째5년간	500
	5년씩 나누어 두번째5년간	1000

## 2. 支廳

각 지역마다 지청(provincial office: CDR)이 ANCONA, BARI, BOLOGNA, BOLZANO, CAGLIARI, FLORENCE, GENOA, MATERA, MILAN NAPLES, PADUA, PALERMO, PERUGIA, PESCARA, REGGIO, ROME, TURIN, TRENTO, UDINE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이탈리아 특허청 본청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자료의 처리 및 보관, 열람을 주업무로 한다.

누구든지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자료, 서류, 하드

카피나 비디오 명세서 등을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특허청내 공공 열람실(전화: 06/47053054-47053010, 팩스: 06/4788787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일정 요금을 지불하고) 자료를 발송해주기도 한다. 또한 민원에 대한 상담, 등록증이나 출원과 관련한 기록의 열람,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부여된 특허나 실용신안 등 발명과 관련한 서류, 1991년이래 출원된 특허나 실용신안과 관련한 서류, 1995년이후부터는 FileNet 시스템방식에 의해 광디스크로 저장되어 관심있는 자료의 열람이 더욱 편리해졌다. 검색단말기에 의해 1968년 이후 현재까지의 특허자료는 서지적인 검

색(bibliographic search)이 가능하다.

이탈리아특허청(UTBM)은 1993년 7월부터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해 CD-ROM으로 저장하여 공보를 발행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의해 생산된 다음의 CD-ROM은 공중이 열람할 수 있다. 즉 공개명세서를 포함한 EPA, 등록된 명세서를 포함한 EPB, 명세서의 서지적 사항을 포함한 BULLETIN, 공개공보의 첫페이지를 포함한 WORLD, 유럽과 국제출원의 영문 초록과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ACCESS, 심판부의 결정과 지침, 규정을 포함한 LEGAL, 그밖에 2,100만의 방대한 자료를 수록한 EPODOC을 통한 검색, 국제상표의 검색이 가능한 ROMARIN 등을 들 수 있다.

특허청은 청장, 차장이외에 10개국으로 나뉜다.

1	데이터 처리센터와 공공정보 서비스
2	인사, 서무, 등록, 출원, 경제실시권 부여
3	국내, 국제 실용신안의 심사
4	특허 및 신식물변종의 심사
5	특허의 심사
6	특허의 심사/ 반도체 집적회로 등록
7	유럽특허와 국제출원(PCT)
8	국내상표 심사
9	국제상표/ 원산지표시
10	산업재산권 분쟁, 국제협력, 부수적인 보호 (supplementary protection:medicines and plant health products)

### 3. 이탈리아 特許訴訟 制度

이탈리아 법원은 동일 소송내에서의 침해와 무효의 사건에 대해서 독일에서와는 달리 따로 다루지 아니하고 함께 다룬다. 한편 법원내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고도로 의지하는 경향이 같다.

#### 실체법의 관점

일반적으로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특별히 막대하게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해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해석하는 방편을 채택한다. 그러나 EPC의 법 통일화의 결과로 인하여 특허의 보호범위는 이탈리아내에서도 청구범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EPC 제69조)

### 4. 侵害訴訟 制度

이탈리아내 특허침해는 피고가 거주한 곳이나 침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Tribunale)에 그 관할이 있다. 로마법원 관할내 속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이 곳곳에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탈리아내 대부분의 특허소송은 Milan에서 심리한다.

통상 단독판사에 의해 처리되는 결정이 시행될지라도 지방법원은 삼인 합의체로서 심리를 진행한다.

이탈리아 법률체계는 커먼로국가에서의 對審制度와는 반대로 inquisitorial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민사소송면에서 이 제도는, 당사자가 이것만을 꾸준하게 추구한다면 이 소송이 원만하게 개시되고 진행될 것이란 점은 엄격히 말해서 맞지 않다. 누구의 역할이 빠진 것인가? 법원 그자체나 법원이 지명한 전문가는 G-7 어느 국가보다도 소송에서의 역할이 지대하다.

이탈리아는 프랑스국가처럼 의심된 침해자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두를 요청할 수 있다.(이탈리아 특허법 제81조) 이때 관련된 모든 증거를 포획할 수도 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피고를 침해와 관련된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만드는 효과 때문에 법원은 광범위한 (실제침해범위를 넘

지 못하도록) 포획명령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 증거 서면제출시도 그 목적을 넘지 않도록 수색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게 된다. 원고는 수색하는 동안에 증거를 찾아 현시화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송상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만일 침해품이 압류되고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기 압류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반드시 규명으로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압류가 부당하게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만일 법원이 부당하다는 명령을 하게 된 경우, 압류는 채택된 증거로 이용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비록 압류의 명령이 사정계로 이루어진 경우일지라도, 8일이내에 당사자 변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원고의 변론이 취약하게 나타난 구술변론에서 압류의 연속된 형태는 매우 근원적인 항목으로 위치를 점하며 조건적으로 변할 것이다. 게다가 통상의 소송은 압류로부터 획득된 증거가 당해 소송내에서 채택되어진 경우라면 그 증거의 압류로서 8일이내 제기될 것이다.(이탈리아 특허법 제82조)

원고의 권리가 소송에서 승소하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금지명령도 가능하다.(이탈리아 특허법 제83조) 이와 같은 소송에서의 금지명령은 2내지 3주이내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원고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지 못하게 될 때를 위해서 일정한 보증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승소하려면 침해의 인지시 즉각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 법관이 제기된 당해 사건의 심증이 설때까지 서서히 진행하게 된다. 전형적으로 법원은 전문가를 지명하게 되고, 양 당사자들은 법원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전문가를 지명하게 될 것이다. 비록

전문가들이 일정한 명단에서 선택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법원에 이 전문가들을 등록해야 하는데 왜 이들 전문가를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이유가 법원에 제출된다. 이 전문가들의 역할은 법원내에서 주어진 문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다.

법관과 당사자들간에 심리는 공식화 되어있다. 법원의 감독하에 전문가의 역할은 법관의 私室에서 주어지는 감정에 큰 범위로서 놓이게 되는데 이로서 법관은 소송에서 제기된 독립적인 기술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에 대한 비용은 소송에서 폐소한 자에게 주어진다.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심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드문 사안이다. 당해특허가 무효감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피고는 반소하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들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상호 변론을 짧게 한 후 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의 실체법에 대해서 굴복을 하게 된다. 비록 이탈리아 민사소송법에 구술변론의 조항이 있을지라도 실무적으로 모든 경우에 구술변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는 법원에서 지명한 전문가의 감정을 대단히 신뢰하고 의존하게 된다. 침해여부의 발견을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법원은 소송내에서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여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 만일 제1심판결후 항소하게 되면, 항고법원은 1심법원에서의 전문가의 감정을 재심하기 위해서 당시 전문가를 통상 지명하게 된다.

이탈리아내에서의 손해배상은 원고가 제시한 실제 손해의 정도에 근거하게 된다. 고의적 침해나 이와 유사한 침해를 위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재손해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명시적인 소멸시효 또

한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덧붙여 패소한 당사자는 비록 악의적이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소송의 비용을 내야한다.

이탈리아내 소송은 예측가능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긴 시간(제1심판결에 2내지 3년 또는 그 이상)을 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소송비용은 비교적 싸다는 장점을 갖는다.

### III. 유럽 특허소송제도

#### 1. 유럽특허조약(EPC)

유럽연합(이하 EU로 약칭)과 유럽특허조약(이하 EPC)의 소송상 장점중 하나는 유럽특허소송을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일 것이다. EPC에 근거한 9달간의 특허이의신청기간후 모든 특허침해의 문제제기는 각국의 법원에 배타적으로 일임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럽국가들이 EPC에 근거하여 당해특허의 유효성에 대해서 수정해야 한다. 이때 당해특허는 유럽특허조약에 의해서 또한 국내법하에 의해서 허여되고 동일한 기준하에 판단되어져야 한다. 부가적으로 EPC는 같은 기준 영역내에 일정불변의 조항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어떻게 유럽특허청구범위가 해석되는가를 정의하는데 관계된다. EPC의 효과가 나오기전에 선행하는 것으로 영국과 독일에서 취급하는 이의신청제도가 있다. 유럽특허조약은 청구범위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매우 간단한 정의를 가지는데 제69조와 같다.

'유럽특허 또는 유럽특허출원서에 의해 허여된 보호범위의 정도는 청구범위의 용어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과 명세서

는 청구범위를 해석하는데 이용되곤 할 것이다.

유럽특허조약의 최종본이 탄생하기전에 있었던 외교회담에서 영국과 독일에 의해 전혀 다른 수단으로 해석하게 되는 간단한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 즉 제69조의 재음미보다는 오히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할 때, 당해특허의 보호범위가 구체화된다.

제69조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청구범위내 표현된 문언적 의미나 청구범위내 발견된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한 명세서나 도면을 엄격하게 정의된 바에 따라 이해에서는 유럽에서 허여된 특허의 실 범위를 제대로 알 수 없다. 당업자에 의한 명세서와 도면의 고려로부터 당해특허의 실제 보호범위보다 확대되거나 청구범위가 단지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제3자를 위한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한 공개와 특허권자를 위한 공정한 보호, 이들 양자사이의 균형점에서 청구범위는 해석될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프로토콜은 매우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여성들의 다리에 난 털을 제거하는 장치인 래밍턴의 에필레이디 특허에 의해 특허침해와 관련된 유럽특허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회전나사형스프링에 대한 이의 성립여부를 가리게 되었다. 이 회전나사형 스프링에 의해 회전되면서 한 카락씩 다리에 난 털을 뽑게 되는 장치에 관한 것인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회전고무바아에 의해 이의가 성립한 것이란 주장이다.

특허의 효력분야면에서 체약국간에 통일화를 향한 몇가지 단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안된 공동특허조약(Community Patent Convention)의 과정을 통해서 침해를 나타내는 소송에 대하여 대

부분의 체약국들은 다소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덧붙여 EPC와 CPC 이외에 두가지 다른 조약은 네 주요한 국가들에 의해 특허소송의 구체화를 이루기 전에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첫 번째 조약은 로마 조약이다. 유럽연합의 기본적이며 헌법적인 문서이다. EEC회원국가내 특허침해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영국에서는 최소한 Euro defenses로서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조약 제2조는 이 조약의 주목적은 회원국가간의 진정한 공동시장의 설립에 둔다는 선언으로 이루어졌다. 1987년 7월, 소위 Single Act로서 EEC 국제 시장의 성장을 촉진의 시도와 회원국가간 사이에 물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낮은 장벽을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 2. 物品의 자유로운 흐름의 原則

이 공동사회에 의해 채택되어진 이 원칙은 EEC의 회원국들간의 동등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모든 조치들과 수입의 양을 제한하는 사항을 금지하는 등의 주로 로마조약 제30조로부터 계수한 것이다. 초기에 나타난 양면가치의 병존으로 유럽법원은 1970년의 저작권사건에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사례가 제30조에서 언급되었던 동등한 결과를 가지기 위한 조치였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내법과 상기 조항간의 분쟁은 명약관화했다. 제36조는 제30조가 산업과 상업상 재산의 보호를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회원국간 무역상 제한사항이나 임의적인 차별의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수입상 어떠한 금지나 제한의 배제를 선언한 것이다.

유럽법원앞에 설 수 있는 사안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커미션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국내법원으로부터의 위임이다. 후자의 경우는 유럽법원이 국내법원에 놓여진 EEC상 질문에 관한 대답인 경우와 이전에 당해사안의 대답을 위한 경우로 제한한다.

국내특허권리와 물품의 자유로운 흐름의 원칙간에 투쟁의 질문에 대한 유럽법원의 세가지 주요한 판결이 있다. 세가지 모두 네덜란드국가내로 의약의 수입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다.

첫 번째 사건은 1968년도에 있었던 Parke Davis 사건이다. 네덜란드 특허로서 이탈리아 국가내에서 특허로서 보호받지 못한 채 시장에 놓여진 네덜란드 의약품의 수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그러나 제85조와 제86조(셔먼법령의 제2절과 유사한 반독점주의 조항)를 인용한 법원은, 회원국가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이기적인 이용인 특허권리의 이용의 부재 상태에서 제86조를 위반할 수 없고 특허권리는 적절한 동의의 상태에서 제85조를 위반할 수 없다는 추정에 근거한다.

Parke Davis사건은 수입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지했다.

유럽법원에 이송된 특허를 포함한 상품의 자유로운 흐름 두 번째의 事案은 1974년 판시된 Sterling Drug事件이다. 네덜란드 특허의 소유권자는 그의 영국 특허의 방어를 위해서 그의 동의로 영국내 시장에 유통되어 온 약품을 네덜란드내로 수입을 막기위해서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상기 Sterling Drug사건은 지지하였다.

상기의 세 번째 사안은 사실면에서 실질적으로 Parke Davis사건과 동일하다. 1981년 9월에 판시된 Merck事件이다. 이탈리아내 시장에서 유통되어온 약품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네덜란드 소유권자였으며, 유럽법원은 그 사실에 유의를 한다. 이러한 환

경하에서 이탈리아로부터 수입을 막기 위하여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Sterling와 Merck사건에서 명문화된 해석은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상·상업상 재산권은 다른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법령에 의존하지 않는다(병행수입 불인정)는 종래의 상표와 저작권 판례에 대하여 재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라이센시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제3자에 의해 판매되었을 때 EEC 회원국가로부터 당해국가내로 물품의 수입을 막는 일국가내에서 특허권자가 그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것이 외관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한다.

그러나 유럽법원에서의 판결이 라이센서가 자신의 권리 영역밖에서 권리화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라이센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정된 EU의 기술라이센싱에 있어서의 면책의 범위내에 드는 라이센스의 존속기간인 경우 라이센서에게 그 구제수단을 주기도 한다는 점이 그 예이다. 또한, 이것은 라이센서가 EU의 다른 회원국가내 물품의 판매를 당해 라이센시의 고객에게는 방지하도록 라이센시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의 함부르크 항소법원은 네덜란드 특허로

특허허여가 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원칙이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네덜란드내에서 독일물품이 수입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며, 특허권자가 당해 독일특허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럽 법원내 大原則을 따르지 아니하는 판결을 수용하였다.

이 판결은 독일 대법원에 의해서도 지지받았는데, 패소한 피고는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례를 인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특허권자에 의해 임의규정의 결과가 되어 암시적인 동의가 된 경우에 타국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빛나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독일헌법재판소의 법령에 따르면, 독일 대법원이 명백히 오류(error)가 없는 때 만이 중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wrong 과는 다른 차원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판결로서 상표 사건에서 나타난다. 즉 IHT Internationale Heiztechnik GmbH v. Ideal-Standart GmbH사건에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국가로 자유롭게 수입되어 당해상표가 그 국가에서 개시되고, 당해상표가 붙은 물품이 지정국가에서 판매되는 것을 독일법원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대는 특정국가내에서 특허 획득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다. <계 속>

발특9808

